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

·사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5. 24. 2005고단6978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차순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조인섭(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월로,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 정한다.

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6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압제4286호의 증제1,2,3호를 몰수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1,500원을 추징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05. 8. 하순 경부터 같은 해 11. 20.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의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(1) 2005. 9. 일자불상 14:00경 광명시 소재 광명고속전철역 앞 광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메스암페타민 10그램을 매수하였다는 점, (2) 2005. 10. 일자불상 21:00경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고속 전철역 앞 주차장에서 공소외인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.5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는 점, 피고인 2에 대한 2005. 9. 일자불상 14:00경 광명시 소재 광명고속전철역 앞 광장에서 2,000,000원을 받고 피고인 1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그램을 매도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